

(報告)

성남시의회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빈 호	1055
------------	------

2001 5. 31.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모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내용을 보면

- 성남시의회 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는 목적을
- 동 조례 제2조 직무에서는
 - 1) 의회의 권한에 관한 정착적 자문
 - 2) 의회제도 및 의원 의정활동에 관한사항
 - 3) 기타 의원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을 자문하고
- 동 조례 3조는 자문교수단 구성의 건으로 자문교수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의회 의장이 자문교수 단장이 되며

○ 동 조례 제4~5조는 위·해촉에 관한 사항으로

- 교수단은 석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전·현직 대학 교수로써 성남시 관내 학교에 재직 또는 성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전공 분야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동 조례 제6조는 자문교수단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

- 동 조례 제8조의 자문교수단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하고

○ 동 조례 제9조의 자문방법으로는

- 문서로 요구하고 문서로 답변하되 설명이나 문답이 필요할시는 회의를 소집하여 자문을 받으며
-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시는 구두로도 받을 수 있고
- 기타 필요시는 간담회등에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

○ 동 조례 제10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

3. 검토의견

- 지방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문교수단을 구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 현안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과 의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라고 사료됩니다.